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진정·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진술 대리 등 추가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155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2
1.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2
2.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등 형사 절차에 관한 진술의 대행 또는 대리 명시(안 제2조제1항제1호)	6
3.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2
4.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타 직무에 부대하는 업무’ 추가(안 제2 조제1항제6호)	15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0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IV. 검토의견

1.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①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③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④「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⑥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법」 등 고용·산재보험 이외의 사회보험을 의미함)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규정하고 있음.¹⁾²⁾

1)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체적인 공인노무사의 직무 관련 법령의 범위는 【참고】 공인노무사의 직무관련 법령의 범위 참조

이 중 ①, ②, ③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는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노무사가 노동 법령 위반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수사절차 개시 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어³⁾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건에 관하여 법률문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볼 것임.⁴⁾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 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

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2015도6329 판결 참조

4) 다만, 해당 행위가 예외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의 '노무관리진단'은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함.⁵⁾

현행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①, ②, ④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어⁶⁾ 다른 법률에서 타 자격

5) 제2조(직무의 범위)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6)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⁷⁾에
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편, ①, ②, ④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이를 수행한
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
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⁸⁾

아니하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 7)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이 노동분야의 권리구제,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사무,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는 공인노무사 이외에 타 자격사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문에 명시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 8)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등 형사절차에 관한 진술의 대행 또는 대리 명시(안 제2조 제1항제1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중 노동·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수행하는 진술의 대행 또는 대리에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의 의견진술의 대행 또는 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 ----- -----.
1. <u>노동</u>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 <u>진술</u>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1. <u>노동·사회보험</u> ----- ----- ----- <u>진술(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u> -----

2. <u>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u>	2. <u>노동·사회보험</u> ----- -----
3. <u>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u> <u>에 관한 상담·지도</u>	3. <u>노동·사회보험</u>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6. <u>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u> <u>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u> <u>신고·신청·보고·진술·청</u> <u>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u> <u>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u> <u>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u>	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u> <u>에 부수하는 업무</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사건 등이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의 수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관서에서의 진정·고소·고발·인지 사건에 대한 조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⁹⁾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

9)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변호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하여 마련한 자격제도의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

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형사절차에서의 일정한 조력을 허용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하는 노동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며, 당사자가 고용노동관서의 초동수사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수사절차로 전이(轉移)될 수 있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함)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¹⁰⁾ 관세사도 수사절차로 전이될 수 있는 관세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¹¹⁾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가 수사절차로 전이될 수 있는 조사 절차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음.

다만, 고용노동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은 근로기준 감독을 위한 행정작용으로서의 감독뿐만 아니라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로서의 의미도 있어 공인노무사의 진정·고소·고발·인지 사건에서의 조력이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헌재 1997. 4. 24. 95헌마273, 판례집 9-1, 487, 494),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1)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공인노무사가 의뢰받는 노동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건 당사자는 형사절차상의 형사피의자나 참고인¹²⁾이 될 수 있어 진술 거부권 등 형사절차상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데, 공인노무사는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¹³⁾에 해당하지 않아 피의자와의 자유로운 접견¹⁴⁾¹⁵⁾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원활한 조력이 이루어지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위법수집증거, 전문증거, 자백 등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사항 등 수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인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으로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은 포함되어 있으나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수사의 진척에 따라 형사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음.

13)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14) 체포·구속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치소 등에서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음.

15)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

구분	필수	선택
제1차시험 (선택형)	노동법·민법·사회보험법·영어	경제학원론·경영학원론 중 택1
제2차시험 (논문형)	노동법·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 재구성

한편, 대법원은 고소·고발 등은 「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에 고소·고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는데, 개정안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의 범위에 고소·고발을 포함시키고 있어 조문 내에서 개념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자격사에 해당한다는 점, 사실관계 및 법률판단에 관하여 노동관계법 전문가로서 의견을 의뢰인과 공유해온 점에서 공인노무사가 직무범위에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정 정도 법률적 조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높다는 점, 관세사, 세무사도 피의자 조사나 세무조사에 입회 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하다는 의견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거나 이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로서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공인노무사의 조력은 고용노동행정 기관에서의 행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공인노무사는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는 형사절차에 관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3.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확인, 상담·지도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u>노동</u>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u>노동</u>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6. (생략) ②·③ (생략)	제2조(직무의 범위) ① ----- ----- -----. 1. (생략) 2. <u>노동·사회보험</u> ----- ----- 3. <u>노동·사회보험</u> ----- ----- 4~6.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¹⁶⁾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등에 관한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작성·확인, 상담·지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상담·지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인노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의뢰인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안 제2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타 법률에 그 업무 수행의 근거가 없는 자는 이를 대행할 수 없는데,¹⁷⁾ 현재 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¹⁸⁾ 이들의

16)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고용·산재보험 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을 말함.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사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17)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세무사 등은 법률상 근거를 두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내규에 따라 실무상 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그 업무 수행이 제한될 소지가 있음.

업무 수행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기존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행정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직무 수행 근거규정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국세무사회는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험 업무수행자가 공인노무사로 한정되는 경우 세무사 등에 의해 수행되던 사회보험 관련 신고·신청·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업무가 전면 금지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장 및 권리구제 수단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자격사 직역 간에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함.

대한행정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 확장은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직무 범위를 침해한다는 의견임.

4.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타 직무에 부대하는 업무’ 추가 (안 제2조제1항제6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직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6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6. <u>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u> ②·③ (생략)	제2조(직무의 범위) ① ----- ----- ----. 1. ~ 5. (생략) 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에 부수하는 업무</u>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인노무사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인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 등,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에 부대하는 업무도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인노무사가 주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뢰인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고용노동관서에서의 진정·고소·고발·인지 사건에 대한 조력’을 포함하고 있고 공인노무사가 수사절차에서의 진술 대리 등을 할 여지가 있는데,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인이 아닌 공인노무사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피의자와의 자유로운 접견 등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해석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최근 노동환경 급변을 고려할 때, 공인노무사의 업무 수행 시 국민들이 원활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진술 대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수사절차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세무사회는 ‘직무에 부수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대한행정사회는 개정안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가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비자 업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사 업무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¹⁹⁾

문 의 처

02)6788-5540

- 19)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노동 관계 법령

- | | |
|---------------------------------------|---|
| 1. 「근로기준법」 | 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3. 「최저임금법」 |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4. 「산업안전보건법」 |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 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
|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
| 9. 「노동위원회법」 |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 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
| 10. 「직업안정법」 |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 13. 「숙련기술장려법」 |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
| 14. 「근로복지기본법」 |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15. 삭제 | 3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
| 16. 「고용정책 기본법」 | |
| 17. 「고용보험법」 | |
|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19. 「선원법」 | |
| 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 21.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22. 「임금채권 보장법」 | |
|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사회보험 관련 법령

1. 「국민연금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 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사업장가입자와 관련된 규정
 - 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와 관련된 규정
2. 「국민건강보험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 가.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와 관련된 규정
 - 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와 관련된 규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장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법 제10장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장의 급여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
5.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지급·제한·유예·조정·환수,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및 별표 1의2.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